

안산시시세조례증개정조례(안)

의안	
번호	

제출년월일 : 1994. . .

제출자 : 안산시장

1. 개정이유

- 지방세법 및 동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한 관련 사항과 다른 법령의 개정등으로 용어 변경

2. 주요골자

- 제16조 증 주민세 징수시 특별 징수 방법에 의해 징수토록 신설된 "지방세법 제177조의 2" 규정 삽입하여 주민세 법인할을 제외하고 보통 징수하도록 규정
- 제17조 증 "증기"를 "건설기계"로 명칭변경
- 제24조 증 "증기"를 각각 "건설기계"로 명칭변경

3. 참고사항

- 근거법령 : 지방세법 제177조
지방세법 제177조의 2
대통령령 제14063호
- 예산상황 : 해당없음
- 기타참고 사항 : 대통령령 제14063호('93.12.31)로 증기관리법 시행령 개정되어 부칙제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

안산시시세조례증개정조례(안)

안산시시세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(납기등)중 "법제179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방법"을 "법제17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와 법 제179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 방법"으로 한다.

제17조 제5호 중 "증기"를 "건설기계"로 한다.

제24조 중 "증기"를 각각 "건설기계"로 한다.

부

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(안)
<p>제16조 (납기등) ① (생략)</p> <p>② 주민세의 징수는 <u>법제179조의 3의 규정</u>에 의한 특별징수 방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징수 방법에 의한다.</p> <p>제17조 (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 사항) 법제184조, 제184조의 2 및 제184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자는 다음 각호에 제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 기준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5. <u>증기의 명칭 및 종류 취득 년월일, 등록년월일</u> 용도</p> <p>6. ~ 7. (생략)</p> <p>제24조 (<u>증기에 대한 신고의무</u>)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<u>증기의 명칭 및 종류, 취득년월일, 등록년월일, 용도, 취득가격, 과세사실</u> 발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1. <u>증기를 취득한 때</u></p> <p>2. <u>증기를 매도하거나 사용할수 없게된 때</u></p>	<p>제16조 (납기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 - - - - 법제17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와 법179조의 3의 규정에 의한 - - - - -</p> <p>제17조 (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)</p> <p>- - - - -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<u>건설기계의</u> - - - - -</p> <p>- - - - -</p> <p>6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4조 (<u>건설기계에 대한 신고 의무</u>) ①</p> <p>- - - - -</p> <p>- - <u>건설기계의</u> - - - - -</p> <p>- - - - -</p> <p>- - - - -</p> <p>- - - - -</p> <p>1. <u>건설기계</u> - - - - -</p> <p>2. <u>건설기계</u> - - - - -</p> <p>- - -</p>

현행	개정 (안)
3. 국외에서 사용하던 증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될 때	3. - - - - - 건설기계 - - - - -
4. 비과세 증기가 과세 증기로 될 때	4. - - - 건설기계 - - - 건설기계 - -
5. 과세 증기가 비과세 증기로 될 때	5. - - - 건설기계 - - - 건설기계 - -